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수행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면서,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(7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2025년 3월 31일”을 “2027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34”를 “135”로, 일반직 계 “133”을 “134”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29”를 “130”로 한다.

별표 3 제3호 중 “2025년 3월 31일”을 “2027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한시정원) ① ~ ② (생략)	제17조(한시정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5년 3월 31일까지</u>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3월 31일까지</u> ----- ----- -----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3